

『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 지방분권에 관한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,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 ~ 제4조)
- 지방분권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,
「지방자치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